

학생지도 규정

제정 2016.03.01.

개정 2018.02.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라 한다) 학칙 제41조와 제42조의2의 학생지도에 관한 제반사항과 대학생활 적응 및 인성 발달을 돕고,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학생지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재학생, 졸업생에 대한 지도와 지도 과정, 결과에 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지도체계 및 역할) 통합적 학생지도를 위해 관계 부서와 스쿨(학과)에서는 상호 협조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
①스쿨(학과)은 학칙 41조에 의거 재학생들의 생활 및 진로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

②학생진로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(진단)와 상담을 주관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③학생담당 부서는 학생지도와 학생복지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다루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④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는 진로실현과 관련한 교육, 상담 등의 취업지도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⑤학생활동 지원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학생지도 및 상담) ①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각종 진로·심리검사(진단)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지도교수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검사결과에 따라 지도교수는 특이자에게 추가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②지도교수는 본인이 담당한 재학생을 개별 상담하고 그 결과를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학생지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③종합정보시스템에 학생개별상담 실시 내용을 기록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.

④본 대학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인성발달, 진로 선택을 위해 적극 상담에 임하며 이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
제5조(전공역량평가) ①학생들의 전공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한 ‘전공역량평가’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전공역량평가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종합적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강지도, 비교과 프로그램 추천, 각종 공모전 추천 등의 후속 지도를 할 수 있다.

③전공역량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스쿨(학과)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학생이력관리) 제3조내지 제5조의 결과는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향후 학습 및 취업지도에 활용하도록 한다.

제7조(실태 및 만족도 조사) ①학교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재학생,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대학 및 스쿨의 각종 사업과 교육체계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.

③실태 및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8조(기타) ①학생지도에서 발생하는 상벌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②기타 관련규정 외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